

제14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암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송부하고, 공단 지사는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공단이 별도로"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1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2016년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전년도의 총 출고량은 827,170톤으로 한다.

인구수는 50,801천명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2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인구수 및 반영계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인구수 및 반영계수 전년도의 총 매입량은 330,051톤으로 한다.

인구수는 50,801천명으로 한다.

반영계수는 0.2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